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45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영호·김문수·이병진

고민정 · 김동아 · 권향엽

김준혁 · 김성환 · 김승원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함)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함.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총장선거 제도를 전환하거나, 이사회에서 원하는 총장을 임명하고 있어 해당 대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대학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총장도 해당 대학교의 학생·교원·직원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도록 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3조의6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 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임용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대학교육기관의 학생·교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거쳐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임용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로 선정·추천하여야 한다.
- ④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5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6(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 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를 선

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각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u><단서 신설></u>	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
	영자가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u><신 설></u>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학교
	육기관의 장의 임용 추천을 위
	하여 대학에 임용추천위원회
	(이하 "임용추천위원회"라 한
	<u>다)를 둔다.</u>
<u><신 설></u>	③ 임용추천위원회는 해당 학
	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학생・교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거쳐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대학교육기
	관의 장 후보자로 선정・추천
	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 ④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의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u>⑤</u>·<u>⑥</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제53조의6(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위탁)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직접선거로 대학교육기관의 장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 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 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법 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가 대학교육기관 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 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 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 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 립학교경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